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98
----------	-----------

제안년월일 : 2016년 5월 3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복내용 정리, 자구 정리 등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률의 약칭을 명시함. (안 제2조제1호 관련)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명칭 등은 꺾쇠(「」)로 표현함.(안 제2조제1호, 제2조제9호,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관련)
- 중복된 내용과 법령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함. (안 제11조의2 관련)
- 새롭게 도입되는 포상금 관련 규정 적용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함. (안 부칙 관련)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법률”을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한다.

안 제11조의2제1항 제1호 중 “통고처분,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와 제4호 중 “벌금”은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안 제11조의2제2항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목 중 “보상금 및”을 “보상금, 포상금 및”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이하 “ <u>「부패방지 권익위법」</u> ”이라 한다)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u>공익신고자보</u>	제11조(보상금) ① <u>공익제보자는 다음</u> ----- ----- ----- ----- ----- ----- <u>---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u> ② ----- ----- ----- <u>공익신고는</u>	제11조(보상금) ①(개정안과 같음) ② ----- ----- ----- <u>공익신고는 「</u>

호법 시행령의 [별표2]보
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⑧ (생략)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
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
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③~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
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
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
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
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통고처분,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
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
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
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는 「부패방지권익위
법」-----

③~⑧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의2(포상금) ①(개

정안과 같음)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
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u>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u> 4. <u>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u> 5. <u>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u> 6. <u>공익제보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u> 7. <u>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u> ② <u>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	4. <u>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u> 5. (개정안과 같음) 6. <u>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u> 7. (개정안과 같음) ② <u>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u>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12조(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u>부칙</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u> <u>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u>
--	--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률”을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보상금 심의”를 “보상금 심의 및 제1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심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침해행위의”를 “공익제보 대상행위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음”을 “공익제보자는 다음”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보상금 산정기준”을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제12조 제목 중 “보상금 및”을 “보상금, 포상금 및”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다른”을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으로, “그 보상금”을 각각 “그 보상금, 포상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으로, “그 보상금”을 “그 보상금, 포상금”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2.~8. (생략) 〈신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생략) 1.· 2. (생략)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u>보상금 심의</u>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생략)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u>공익침해행위의 증거</u>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u>「부패방지권익위법」</u>”이라 한다)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2.~8 (현행과 같음) 9. “<u>내부 공익신고자</u>”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u>보상금 심의 및 제1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심의</u>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공익제보 대상행위의</u>----- ----- 제11조(보상금) ① <u>공익제보자는 다음</u> ----- ----- ----- -----

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⑧ (생략)

〈신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

②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③~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생략)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
-----그 보상금, 포상금-----

-- 그 보상금, 포상금-----

③ -----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그 보상금, 포상금-----

-----.

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u>부칙</u> <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u>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 <u>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u>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